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904 2023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□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904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시 중소기 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.

2) 주요내용

가. 2022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계획 변경

○ 2023년 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/세부시업	당초(A)*	변경(B)	증감 (B-A) (증감률)
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
중소기업 금융지원	304,216	304,216	-
중소기업직접융자	200,000	200,000	_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102,800	102,800	-
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	279	279	_
기금업무대행수수료	1,137	1,137	_
재무활동	68,427	122,778	54,351 (79.4%)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원리금 예수금 상환	10,000	10,000	_
통합재정인정화기금(통합계정) 원리금 예수금 이지상환	2,640	2,640	_
예치금	55,787	110,138	54,351
행정운영경비	5	5	_
기금관리비	5	5	_

- *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('22.12월)을 받은 금액임
-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백만원)

수	입 :	계 획			지 출	계	획	_
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A-B)		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A-B)
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		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
기금 융자금회수	257,762	257,762	1		기금 융자금	200,000	200,000	_
(이자포함)				사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	102,800	102,800	_
공공예금 이지수입	2,770	2,770	- 비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79	279	_	
예치금	70 707	105 107	54.040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137	1,137	_
회수	70,767	125,107	54,340	재	통합재정인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10,000	10,000	_
기타(일반)회계 전 입 금	41,349	41,349	_	무활동	통합재정인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2,640	2,640	_
				동	예치금	55,787	110,138	54,351
기타수입	수입 - 11	11		기본경비	5	5	_	

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543억 4,000만원)와 기타수입(1,1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여유자금 예치(543억 5,1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1)는 "정책사업"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.
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2)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을 당초 지출계 획보다 79.4%, 543억 5,1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

^{1) 「}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²⁾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, 7), p.296

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: 백만원. %)

								1 = = , , , , ,		
7	정 책	사 업 / [단 위 세	사 업 / 서	부 시	h 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7	य	출		합		계	372,648	426,999	54,351	14.5
	중	소 기	업	급 원	· 기	원	304,216	304,216	ı	1
	일	반 예	산 (재 무	활 동	5)	68,427	122,778	54,351	79.4
	E C	통 합 재 경 계 수 금	성 안 정 및	화 기 금 이 자	원 ^리 상	l 금 환	12,640	12,640	-	-
		여 유	사	금	예	치	55,787	110,138	54,351	97.4
	행	정	안	영	경	비	5	5	ı	1

- 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지출계획,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, 5,30) 재구성
-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수·지 우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^{3) 「}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조성)

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^{1.} 시로부터의 전입금

^{2.}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

^{3.}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

^{4.}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: 「생략」

Ⅵ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-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○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○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
○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
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
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
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
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

박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
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O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O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Ⅵ. 부대의결: 「생략」

Ⅷ. 심사결과: 원안가결(2023. 6.30.)

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904

제출년월일: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2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
 - 2023년 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(단위 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당초(A)*	변경(B)	증감 (B-A) (증감률)
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
중소기업 금융지원	304,216	304,216	_
중소기업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102,800	102,800	_
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	279	279	_
기금업무대행수수료	1,137	1,137	_
재무활동	68,427	122,778	54,351 (79.4%)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원리금 예수금 상환	10,000	10,000	_
통합재정인정화기금(통합계정) 원리금 예수금 이지상환	2,640	2,640	_
예치금	55,787	110,138	54,351
행정운영경비	5	5	_
기금관리비	5	5	_

*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('22.12월)을 받은 금액임

○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입 호 지 춬 획 수 계 계 당초(A) 변경(B) 증감(A-B) 항 목 당초(A) 변경(B) 증감(A-B) 항 목 372.648 426.999 한 54.351 한 계 372,648 426.999 54.351 계 기금 기금 융자금 200.000 200.000 융자금회수 257.762 257.762 (이자포함) 시중은행협력자금 102,800 102,800 이차보전금 공공예금 자금통합관리시스템 2.770 2.770 279 279 이자수입 유지보수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,137 1,137 예 치 금 70.767 125.107 54.340 회 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,000 10,000 예수금 상환 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타(일반)회계 2.640 2.640 41,349 41,349 예수금 이자 상환 전 입 금 예치금 55,787 110,138 54,351 기타수입 11 11 기본경비 5

(단위: 백만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
-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오승백 (☎ 2133-5190)